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권리 이해하기

육아휴직

컬럼비아 특별구 육아휴직법 (DC Parental Leave Act)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에 해당되는 피고용인은 학교 관련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24시간의 휴가 (유급 또는 무급)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는 학부모-교사 회의, 콘서트, 연극, 리허설, 스포츠 행사 및 아동이 관중이 아닌 참여자이거나 행사의 주체인 기타 활동이 포함되나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학교 관련 활동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예: 아동의 담당 교사가 긴급 학부모-교사 회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할 휴가 시작일 10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휴가는 무급 또는 유급 가족 휴가, 개인 휴가, 보상 휴가 또는 은행 업무차 휴가일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고용주의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생산이나 서비스 달성에 이례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정의

피고용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로 간주됩니다:

- 아동의 생물학적 어머니 또는 아버지;
- 아동의 법적 양육권이 있는 당사자;
-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당사자;
- 아동의 이모, 삼촌 또는 조부모; 또는
- 상기에 명시된 사람과 혼인 또는 동거 관계에 있는 당사자

고용주 게시 요구사항

고용주는 이 통지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고의로 게시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게시하지 않은 일수 1일에 대하여 \$100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1977년 DC 인권법 (D.C. Human Rights Act of 1977, DCHRA) 및 1999년 인권확립법(Human Rights Establishment Act of 1999, HREA)의 입법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DC 인권 사무소(Office of Human Rights, OHR)에서 제공한 사실 자료 및 지침입니다. 이 문서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위반과 관련한 이의 제기

고용주가 본 법령에 따른 육아 휴직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인권 사무소(OHR)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여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OHR의 절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202) 727-4559 번을 통해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ohr.dc.gov; 또는
- **직접 방문:** 441 4th Street NW, Suite 570N, Washington, DC 20001

OHR의 절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202) 727-4559 번을 통해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